

의안번호	2216215
의 퇴 인	김용태의원
회 답 일	2026.4.1.
추계번호	26C04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9조의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제2항)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 현행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부가급여’ 규정을 법률 상향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u>고위험 임산부</u>에 해당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u>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u>을 할 수 있다.(제5항) ○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사용 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9조의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안 제49조의2)

- 개정안은 고위험 임신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현행 임신·출산 진료비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 － 현행법 제50조¹⁾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²⁾는 부가급여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법령으로 상향하고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한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100~120만원)을 제공하고 있음

-
- 1)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①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2세 미만 영유아”라 한다)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④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발급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이용권을 발급해야 한다.
 - ⑥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⑦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다만, 개정안은 구체적인 진료비 지원의 방법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미 고위험 임신부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제도나 국가사업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입원진료에 대한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20%이나,³⁾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입원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10%로 본인부담률이 경감되고 있음
 - 또한, 「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소득과 관계없이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나아가, 현재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고위험 임신부 지원금을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 재정 외로 운용되기 때문에 국가의 총 재정소요는 현행보다 감소할 수 있음
 -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⁴⁾. 다만,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⁵⁾,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지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⁶⁾⁷⁾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4)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5) 건강보험료율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6)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7) 2023~2025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